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64
----------	-------

발의연월일 : 2026. 6. 10.

발 의 자 : 오세희 · 강경숙 · 이언주
이광희 · 박희승 · 박정현
장철민 · 이수진 · 김현정
이용우 · 이주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형소공인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 에너지 비용 상승, 글로벌 인증 기준 강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도시형소공인은 소규모 제조업의 핵심 주체임에도 기술 단절, 설비 노후화, 작업환경 위험 노출, 판로 및 수출 경쟁력 부족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제조데이터 활용, 디지털 기반 생산체계 전환, 집적지구 운영 관리 등 변화된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경영안정, 판로 확대,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정책 영역이 법률상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제조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종합계획에 경영안정 지원을 포함하며, 집적지구 전담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제조데이터 활용, 판로·유통,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 및 생산환경 고도화 지원 근거를 보완하며, 전담기관 관리체계 및 청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여 디지털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경영안정 지원을 포함하고,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공표 의무를 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안 제5조).

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리체계를 규정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라. 제조데이터 활용, 판로 확대 및 유통 지원,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지원사업을 법률에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신설 등).

마. 사업장 개선 지원 범위에 공정 개선을 포함하여 생산환경 개선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19조제3항).

바. 전담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 절차를 명시하여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안 제27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조데이터”란 제품의 기획·설계·제조 등 제조과정과 제품의 유통, 마케팅, 유지·관리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활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제5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에 관한 협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도시형소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를 “추진실적과 성

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전담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집적지구 별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집적지구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
2. 집적지구 내 공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집적지구 운영 관리 및 평가
4.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사유와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교체하고”를 “교체하거나 공정을 개선하고”로 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7조로 하고,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4조 및 제25조로 하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7조(중전의 제24조) 중 “제1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해제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 기반 조성과 제조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활용 기반 구축
2. 제조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제조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지원
4. 그 밖에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판로 확대 및 유통 지원) 정부는 도시형소공인 제품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제품의 공동 유통 플랫폼 구축
2. 집적지구별 공동 물류 및 유통체계 구축
3. 도시형소공인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운영
4.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유통 네트워크 구축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제품의 시장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 지원)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향상과 제품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의 품질 향상 및 표준화 지원
2. 품질·표준 인증 및 시험·검사 지원
3. 제품 성능 개선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제1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해제
2. 제15조의3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조데이터”란 제품의 기획 · 설계 · 제조 등 제조과정과 제품의 유통, 마케팅, 유지 · 관리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활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u>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생 략) <u><신 설></u> 11. (생 략) ③ (생 략) <u><신 설></u>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u>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④ (생 략)	

제6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도시형소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생략)

<신 설>

제6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에 관한 협조를-----.

③ -----추진실적과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5조의2(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전담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신 설>

위하여 집적지구별로 도시형소
공인 집적지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집적지구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

2. 집적지구 내 공동시설의 관
리 및 운영

3. 집적지구 운영 관리 및 평가

4.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 등
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절
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5조의3(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② (생략)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신설>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사유와 정
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교체하거나 공정을
개선하고-----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정
부는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
기반 조성과 제조활동의 효율
성 향상을 위하여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신 설>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활용 기반 구축

2. 제조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제조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지원

4. 그 밖에 제조데이터 활용 촉
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판로 확대 및 유통 지원)

정부는 도시형소공인 제품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제품의 공동
유통 플랫폼 구축

2. 집적지구별 공동 물류 및 유통
체계 구축

3. 도시형소공인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운영

4.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유통
네트워크 구축 및 마케팅 지
원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제품
의 시장 진출 기반 조성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

<u><신 설></u> <u>제21조</u>(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생략) <u>제22조</u>(사회적 인식의 제고) (생략) <u>제23조</u>(권한의 위임·위탁) (생략) <u>제24조</u>(청문) 중소기업부장관은 <u>제1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해제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23조</u>(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 지원)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향상과 제품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u>1. 제품의 품질 향상 및 표준화 지원</u> <u>2. 품질·표준 인증 및 시험·검사 지원</u> <u>3. 제품 성능 개선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u> <u>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제24조</u>(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행 제21조와 같음) <u>제25조</u>(사회적 인식의 제고) (현행 제22조와 같음) <u>제26조</u>(권한의 위임·위탁) (현행 제23조와 같음) <u>제27조</u>(청문)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u> ----- ----. <u>1. 제1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u>
--	---

<u><신 설></u>	<u>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u> <u>해제</u> <u>2. 제15조의3에 따른 전담기관</u> <u>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u>
---------------------------	---